

망마국민체육센터 이용수칙

제1장 수영장 회원 및 강습

제1조(목적)

본 이용수칙은 여수시 망마국민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① 망마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의 회원 구분은 강습 회원(일반강습반, 어린이반, 실버반), **아쿠아로빅반, 월권 자유수영, 일권 자유수영** 회원으로 구분하며, 강습회원에 대한 개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강습반(초급·중급·고급)** : 중학생 및 만 13세 이상 67세 이하의 여수시민
2. **어린이반** : 초등학교 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여수시민
3. **실버반** : 만 65세 이상의 여수시민
4. **아쿠아로빅반** : 중학생 또는 만 13세 이상의 여수시민
5. **자유수영반** : 대상 및 강습기간 제한 없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신장 등 신체적 사유로 인하여 수영장 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강습반에 대한 모집·추첨(2차 모집·추첨)의 경우에는 여수시민이 아닌 사람도 강습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3조(온라인 강습 신청)

① 온라인 강습 신청은 공단에서 지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 강습 신청 시 동일 강습 수준 내에서 최대 2개 강습반까지 신청 가능하며

초급 강습반의 경우 1년 이내 중·고급·자율연수반 수강 이력이 있는 회원은 초급반

신청이 불가하다. 단, 중급[접영] 과정 환불 회원은 초급반 신청이 가능하다.

③ 온라인 강습 신청 시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 시, 또는

변경된 연락처를 안내데스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회원)에게 있

다.

- ④ 온라인 강습 신청을 완료하면 희망시간대의 대기자로 접수된다. 추후 수영장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추첨이 진행되며 당첨자에 한해 강습이 가능하지만, 강습중인 회원은 강습 신청이 불가하다. 단, 졸업반(고급3반) 회원의 경우 강습중에 중·고급 수영강습 신청이 가능하다.

제4조(회원등록)

- ① 등록 통지의 방법은 체육시설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하며,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 ② 회원등록은 등록기한 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미 등록 시 등록포기자로 간주되고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 ③ 강습당첨자는 등록기간내 강습 결제를 완료해야하며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 후 현장 방문하여 본인인증·회원등록 및 이용안내 등을 설명 받아야 한다.
- ④ 월권 자유수영 이용은 온라인에서 상시 신청 및 결제가 가능하며 결제는 현장에서 가능하다. 월권 자유수영은 공휴일을 제외한 결제 다음날 이용이 시작되며 결제 이후 개인사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일수에서 차감된다. 단, 결제 전 수영장에 문의하여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강습)

- ① 탈의실 입장시간은 자유수영 시작시간 20분전부터 종료시간 20분 전 까지이며, 수영장 내 입장은 자유수영 시작시간 10분 전 부터로 한다.
- ② 반별 강습시간(자유수영포함)은 배정시간 매시간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50분 경과 시** 지체 없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 ③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이용 시 강습 및 자유수영 포함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④ 해당 강습시간 불참자가 타 시간을 이용할 경우 자유수영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 ⑤ 강습반 회원은 강습도중 강습반 및 강습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 ⑥ **모집정원 미달 시 강습운영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해 필요에 따라 폐강·**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아쿠아로빅 등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수영 강습과 중복 수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경우 3개월분까지 선 결제 할 수 있다.

제2장 반환 및 변경

제7조(회원 이용료 및 개인사물함 반환)

① 회원이 등록이후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위약금 없이 정지기간의 이용료 전액 반환
2. 졸업반 또는 자유수영 회원기간 중 강습회원으로 전환될 경우 위약금 없이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반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환불신청 당일의 공제여부는 출석유무를 판단해 미 출석자일 경우 사용 취소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제3호의 위약금은 프로그램 시작 전 이용료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용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개인 사정이 아닌 수영장 운영 사유로 추가 결제한 졸업반은 위약금 없이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단, 졸업하는 달은 모두 수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금액 산정은 [별지 4]와 같다.

③ 이용료 반환은 회원본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④ 수영장은 반환금을 회원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신청일로 부터 운영일 기준 3주 이내에 지불하며 운영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⑤ 강습시작일이 명시되기 전까지는 위약금 공제(10퍼센트) 없이 일할 계산한다.

⑥ 2개월이상 결제한 경우 잔여일의 계산은 1개월 단위로 나누어한다.

제8조(회원기간 연기)

- ① 회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7일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 할 경우
 2. 그 밖에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 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경우
- ② 연기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연기는 회원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9조(수영장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 ① 수영장 운영시간은 평일 06:00부터 21:3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8:00이다.
- ② 수영장 이용시간은 평일 06:00부터 20:5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7:30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정기휴장은 법정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근로자의 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수영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휴장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및 사유를 홈페이지 및 현장에 게시 및 문자메시지로 공지한다.
 1.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체육대회 개최 등 공식행사 개최 시
 3. 시설의 보수, 보강,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 3장 시설이용 및 손해배상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시설 이용 시 지켜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체육센터에서 지정한 실내수영장용 규정 수영복 및 수영모, 수영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수영장 이용 후 샤워실, 락커룸 등에 개인 샤워용품을 보관해서는 안 되

며 퇴실 시 본인이 직접 가져가야 한다.

3. **여성회원은 생리기간 중**에는 수영장 사용을 자제한다.
4.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하다.
5. 만4세 이상 어린이는 남·여 탈의실을 구분하여 입장하여야 한다.
6. 만3세 미만의 어린이와 동반 입장할 경우 방수 기저귀를 필히 착용 후 입장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7. 만12세 이하 초등학생이 경영풀 자유수영 입장을 원할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보호자(가족, 선생님, 인솔자)가 동반 입장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8. 수영장 내부로는 외부음식물을 절대 반입할 수 없다.
9. 수영 중 신체에 이상 징후를 느끼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시 즉각 수영을 중단하고 수영강사 또는 안전강사에게 통보해야한다.
10. 수영장 내 휴대폰 또는 촬영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일체 반입을 금지한다.
11. 이용자 간의 상호존중, 예절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수영장 출입제한 및 회원자격 박탈)

① 다음의 경우는 수영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취중에 있는 자와 시설 내 소란과 위해가 염려되는 자
2. 용변의 배설이 불편하여 상습적으로 경영풀,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배출하는 자
3. 기타 수영장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의 출입제한 또는 회원자격이 박탈된

자

4. 직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5. 화장실 지우지 않았거나 오일, 염색약을 바른 경우
6. 심신질환, 전염성질환 등 타 회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강제 퇴장시키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수영장 안에서 다이빙 하는 경우
2. 기타 광범위한 피부질환, 건강상 강습이 불가능한 자로 판단될 경우
3. 본인 강습반이 아닌, 타 강습반에 들어간 경우(초급오전반 → 초급저녁반,

자유수영 → 초급새벽반 등등)

4. 수영장 허가 없이 개인이 임의대로 강습 또는 수영지도를 할 경우
5. 타인에게 특정 영법, 수모, 행동 등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수영을 방해하는 경우
6. 공단의 허가 없이 수영장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경우
7. 이용자 상호간의 상행위 또는 금전거출 행위를 하는 경우
8. 기타 수영강사 또는 안전근무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제12조(개인사물함)

- ① 개인사물함은 강습 또는 월권 자유수영, 아쿠아로빅반 회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다.
- ② 회원은 체육센터 내 설치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단에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 ③ 공단은 신청을 허가한 후 개인사물함 열쇠를 교부한다.
- ④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월 5,000원으로 한다.
- ⑤ 이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 ⑥ 회원이 개인사물함 열쇠를 분실한 경우 즉시 이를 공단에 알려야 하며, 열쇠 교체 비용 10,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
- ⑦ 회원이 개인사물함 사용을 종료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공단에 열쇠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⑧ 회원자격 상실 후 5일 이내에 열쇠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보관함 내 물건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 ⑨ 개인사물함 이용료 반환은 제7조(회원 이용료 및 개인사물함 반환)을 따른다.

제13조(손해배상)

- ① 체육센터 내 본인 부주의에 따른 시설물 파손, 훼손 등은 행위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의 귀중품 또는 개인 휴대용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본인 관리에 있으며 만약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시설이 책임질 수 없다. 단, 귀중품의 경우 안내데스크에 보관 가능하다.

- ③ 개인사물함, 락커룸 옷장의 열쇠를 분실 및 파손한 경우 교체비용 10,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
- ④ 체육센터 건물 내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수시 영조물 배상책임에 근거하여 그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부주의, 지병,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시설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⑥ 배상의 범위는 여수시 영조물 배상책임에 근거한다.

제 4장 다목적체육관 시설이용

제14조(개방)

- ①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6:00부터 22: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
- ② 다목적체육관의 정기휴장은 명절 연휴(설, 추석), **근로자의 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임시휴장은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 15조(시설이용 및 준수사항)

다목적체육관의 시설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다목적체육관의 이용은 일일 2시간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체육관 시설 운영상 단체 또는 개인전용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2. 다목적체육관은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이용시간을 초과하거나 배정된 코트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
4. 다목적체육관 이용 중 개인 휴대물품의 분실에 대해서 체육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다목적체육관 내에서는 일체의 강습행위를 할 수 없다. 단,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은 **생활체육 목적의 강습행위**는 가능하다.

제5장 기 타

제16조(분실물)

락커룸, 샤워실 등 체육센터 내의 회원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 분실물은 분실물 보관대에 일괄 비치하며, 비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공단은 해당 물품을 임의로 폐기 또는 처리할 수 있다. 단, 전자기기·귀금속류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별도 보관하며, 보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관계 법령 또는 본 수칙에 따라 자체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고지)

공단은 본 이용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 비치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본 이용수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계법령 및 공단의 방침을 따른다.

제19조(이용수칙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이용수칙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안내데스크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며,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본 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칙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고,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이용수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효력 발생일 이후 지속적인 이용 시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망마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신청서

[별지2] 망마국민체육센터 환불신청서

[별지3] 망마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신청서

[별지4] 수영장 이용권 및 사물함 사용료 반환기준

환 불 신 청 서

구 분	<input type="checkbox"/> 이 용 료 <input type="checkbox"/> 사 물 함
1. 원 금 액	₩
2. 공제/일수	% + 일
3. 최종금액	₩
4. 기타사항	

확 인 자 : (인)

접 수 자 : (인)

회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 유		
등록기간 및 프로그램	적용기간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신청 시 첨부서류(본 인) : 1. 신분증(서면확인) 2. 통장사본
- 신청 시 첨부서류(대리인) : 1. 회원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 3. 회원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어린이의 경우)
- ※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는 경우(어린이)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과오납금양도신청서 7. 대리인 통장사본 제출 필요

<유의사항>

- ☞ 환불은 신청인 은행계좌로 (통장사본 첨부) 입금 조치해 드립니다.
- ☞ 각종 지방세 체납이 있으신 분은 체납액 공제 후 잔액이 환불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환불 신청 접수 및 여수시 행정처리를 위한 문서 송달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통장사본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간 : 망마국민체육센터는 해당서류를 여수시에 송달 후 별도 보관하지 않음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청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이용료 및 사물함 이용료 환불 처리 업무 수행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은행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환불 처리 완료 후 5년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 망마국민체육센터 이용수칙 제7조(회원 이용료 및 개인사물함 반환)

- ① 회원이 등록이후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
 - 1. 재난, 재해 등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위약금 없이 정지기간의 이용료 전액 반환
 - 2. 졸업반(고급3반, 준마스터, 마스터) 또는 자유수영 회원기간 중 강습회원으로 전환될 경우 위약금 없이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반환
 -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환불신청 당일의 공제여부는 출석유무를 판단해 미 출석자일 경우 사용 취소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4. 제3호의 위약금은 프로그램 시작 전 이용료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용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개인사정이 아닌 수영장 운영 사유로 추가 결제한 졸업반은 위약금 없이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단, 졸업하는 달은 모두 수강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공제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
 -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등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 등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 4. 사용 당일 취소 : 반환금액 없음(일권의 경우)
- ③ 이용료 반환은 회원본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 ④ 수영장은 반환금을 회원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신청일로 부터 운영일 기준 3주 이내에 지불한다.
- ⑤ 강습시작일이 명시되기 전까지는 위약금 공제(10퍼센트) 없이 일할 계산한다.
- ⑥ 2개월이상 결제한 경우 강습 잔여일의 계산은 1개월 단위로 나누어한다.

[별지 3]

이용요금 감면 신청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프로그램명					
감면종류					

20 년 월 일

신청자(본인, 대리인)

(서명)

신청서 작성시 해당 서류 첨부

- 본인일 경우 : 신분증(서면확인) / 대리인일 경우 : 신청자 및 대리인신분증

구분	증빙서류	적용범위	발급처
가정위탁세대	가정위탁확인서	확인서명단 본인	주민센터
세자녀이상가구 (세자녀 중 막내 자녀가 만18세 미성년자 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및 자녀	주민센터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생명나눔증서 기증희망서약서	기증 및 등록자 본인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등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	본인 및 가족(유족)	보건복지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유족결정통지서	본인 및 가족(유족)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망마국민체육센터 이용 및 이용요금 감면 업무의 수행을 위함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감면 대상자 정보) 성명, 연락처, 자녀생년월일,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등록 여부, 의사자 및 의사자 유족 여부, 가정위탁세대 여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여부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망마국민체육센터 회원 탈퇴시
-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망마국민체육센터 이용 및 이용요금 감면 업무가 불가합니다.

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망마국민체육센터

[별지 4] 수영장 이용권 및 사물함 사용료 반환기준

내 용	반 환 기 준	비 고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월권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등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 등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사용 당일 취소	반환금액 없음	일권